

# 第4章 定款・機構 등

## 4.1 定款

### 1. 目的

創立當時와 本學會創設 後 30周年인 1975年 現在 本學會의 目的은 各各 다음과 같다.

(1) 創立當時의 朝鮮建築技術團團則 (1945年 9月 1日 施行)

本團은 建築에 關한 各種 研究調查連絡及 指導를 行하여 斯界의 發展을 圖謀하고 아울러 建築國策에 協力함을 目的으로 함.

(2) 現在의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 定款(1974年 6月 12日 改正)

本會는 建築에 關한 學問技術을 研究 鍊磨하여 建築技術者의 地位向上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定款 및 規則

1945年 9月 1日 創立當時에 制定된 團則과 規則 및 그 後 屢次 改正을 거친 1975年 現在의 定款과 規則은 各各 다음과 같다.

#### (1) 朝鮮建築技術團 團則

(1975年 9月 10日 施行)

##### 第1章 總則

第1條 本團은 建築에 關한 各種研究調查連絡及 指導를 行하여 斯申의 發展을 圖謀하고 아울러 建築國策에 協力함을 目的으로 함

第2條 本團은 朝鮮建築手術團이라 稱함

第3條 本團은 事務所를 서울 市內에 限함

第4條 本團은 役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음

第5條 本團은 第1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下記事業을 行함

1. 建築에 關한 學術手藝의 研究及調査
2. 建築手術者의 登錄配置及指導
3. 建築教育의 振興及勞務者의 手能向上
4. 建築各部門에 連絡協力及建築과 社會各部門과의 連絡協力
5. 建築國策에 關한 調査研究及 其實施에 協力
6. 建築에 關한 社會認識의 啓發과 普及
7. 其他本團의 目的을 達하는 데 必要한 事業

##### 第2章 團員

第6條 本團을 組織하는 團員을 下記二種으로 함

1. 正員
2. 贊成員

正員은 建築의 手術 또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로써 相當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及特히 役員會의 承認을 받은 者

贊成員은 個人又は 團體로써 本團의 目的을 贊成하는 者

第7條 第6條의 團員外에 從員及名譽員을 둘 수 있음

從員은 建築手術學習中의 者 또는 業務에 從事하되 正員의 資格을 具

備하지 못한 者

名譽員은 正員으로써 學識名望이 있고 또 本團을 爲하여 功績顯著한 者로써 役員會의 決議로써 推選된 者

第8條 正員이 되거저 하는 正員 2名 以上の 紹介로서 入團志望書를 本團에 提出할 것

그 許否는 役員會 이를 決함

第9條 贊成員은 2名 以上の 紹介로서 役員會 이를 決함

第10條 准員의 入團手續은 前條의 規定을 準用함

第11條 正員은 團費年額金 240圓 准員은 年額金 120圓 贊成員은 一時金 千圓 以上을 各各 納入할 것

第12條 退團其他手續에 依하여 團員의 資格을 잃은 者는 既納한 團費를 返還치 아니함

第13條 團員으로써 退團코저 하는 者는 그 뜻을 本團에 通知할 것

第14條 本團員으로써 下記 各 項의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役員會의 決議를 거쳐 이를 除名할 수 있음

1. 本團의 團則에 違反하고 또는 本團의 名譽를 損傷하는 行爲가 있는 者
2. 1個年 以上 團費를 納付치 않은 者
3. 1個年 以上 住所不明한 者

##### 第3章 總會

第15條 總會는 通常 臨時的 二種으로 하되 團長이 이를 召集함 總會에 는 正員 外의 團員은 召集치 아니함

第16條 通常總會는 每年 1回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役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正員 5分之 1以上の 請求가 있는 때 이를 召集함

第17條 總會에서 決議할 事項은 大略 다음과 같음

1. 役員의 選定及補選에 關한 事項
2. 豫算及決算에 關한 事項
3. 團則의 變更及改廢에 關한 事項
4. 團則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5. 財産의 取得及管理에 關한 事項
6. 其他役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18條 通常總會는 每年 3月 團長이 이를 召集함

總會의 召集은 적어도 7日 以前에 그 會議의 目的인 事項을 表示하여 郵便電信又は 新聞 雜誌로써 이를 通知함

第19條 總會의 議事は 出席正員의 過半數로써 이를 決하되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此를 決함

但 團則의 變更及改廢는 出席正員의 4分之 3 以上の 同意가 있는 境遇에 限함

第20條 正員은 自身會場에 出席하지 아니하면 會議에 關與하거나 그 表決을 할 수 없음

第21條 團長은 役員會의 承認을 거쳐 下記事項을 通常總會에 提出할 것

1. 前年度收支決算及次年度收支豫算
2. 前年度 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3. 事業의 成績及計劃
4. 團에 債權及債務

第22條 總會에 있어 出席正員 4分之 3 以上の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미리 通知치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도 決議할 수 있음

##### 第4章 本團 役員 職員 及 組織

第23條 本團에 下記役員을 둘

- |       |            |
|-------|------------|
| 團長 1名 | 副團長 2名     |
| 理事 9名 | 評議員 15名 以內 |

團長은 團務를 總理하여 本團을 代表하고 總會役員會及評議員會의 議長이 됨. 副團長은 團長을 補佐하고 團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함

理事는 團長의 命에 從하여 團務를 分擔處理 함

評議員은 團務의 重要事項에 關하여 團長에 諮問에 應함 役員은 總히 名譽職으로 함

第24條 役員은 通常總會에서 互選함

第25條 役員의 任期는 滿 2個年으로 함

그러나 再選도 無妨하고 또 滿期後라 할지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職務를 續行할 責任이 있음

第26條 役員會는 團長의 同意가 없는 限辭任함을 不得함

第27條 役員會는 團長 副團長及理事로써 組織하고 團務全般事項의 執行에 關하여 共同責任을 負함

第28條 第18條 所定 外의 事項及總會에서 特히 附托한 事項은 總히 役員會의 決議를 거쳐 이를 處理함

第29條 評議員會는 役員會의 諮問에 應하여 重要團務를 審議하고 또 團長에게 意見을 傳達할 수 있음

第30條 本團에 顧問若干名을 置함

第31條 本團에 下記職員을 置함

1. 幹事 1名



- 2. 書記 囑託及雇員 若干名  
職員은 有給으로 하고 團長이 이를 任命함
- 第32條 幹事는 團長及部長의 指揮를 받고 書記 囑託及雇員을 監督하여 一切의 團務에 從事함  
書記 囑託及雇員은 幹事의 指揮를 받고 事務를 分擔함
- 第33條 本團에 下記部를 두어 團務를 分擔處理함
  - 1. 總務部: 本團의 一般事務에 關한 事項支부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項
  - 2. 研究部: 學術手藝의 研究調査에 關한 事項
  - 3. 事業部: 連絡, 啓發, 宣傳, 刊行, 統計, 資料又政策에 關한 事項
- 第34條 各部에 部長은 理事中에서 互選함

第5章 支部

- 第35條 支部의 設置는 그 地方住在 正員 10名 以上の 發起로써 同地方在 住正員過半數의 贊成에 依하여 支部의 地域及支部規程案을 具備하여 團長의 承認을 要함
- 第36條 支部地域內에 在任하는 本團員 (准員及名譽員을 包含함)은 該當支部에 屬하기로 함
- 第37條 支部에는 左와 加한 役員을 置함  
支部長 1名 幹事 若干名  
支部長은 支部에 關한 一切의 團務를 處理하고 또 本團의 役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음  
幹事는 支部長을 補佐하여 支部一般事務에 從事함
- 第38條 支部總會 支部役員의 選舉任期 其他에 關하여서는 本團의 規定을 準用함
- 第39條 支部는 本團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特히 그 地方에 必要한 事業을 할 수 있음
- 第40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本團에 準함
- 第41條 支部의 豫算案及決算은 本團役員會의 承認을 經함을 要함 支部는 每年 6月 末日까지 前年度의 決算告書及前年度事業成績報告書를 提出하고 每年 2月 15日까지 次年度의 豫算案을 本團에 提出할 것
- 第42條 本團은 支部의 經費로 其支部所屬團員 據出團費의 5分之 1以內의 金額을 交付함 또한 支部에서 行한 臨時事業이 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本團役員會의 決議를 거쳐 別로 其經費를 補助할 수 있음
- 第43條 支部의 經費는 本團交付金寄附金 其他 收入으로서 此를 支辨함
- 第44條 支部規程의 變更은 本團役員會의 承認을 要함

第6章 資產及會計

- 第45條 本團에 基本資產을 置함
  - 1. 基本資產은 基本資產으로 指定된 寄附金及物件
  - 2. 總會에서 基本財產에 編入을 決議한 財產
- 第46條 本團의 經費는 團費基本財產에서 生하는 收入寄附金及 其他 雜收入으로서 此를 充當함
- 第47條 本團의 收入及 其他 財產은 利益으로서 此를 團員에게 分配할 수 있음
- 第48條 本團의 財產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 團長此를 管理함
- 第49條 本團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에 始作하여 翌年 3月에 終了함

第7章 雜則

- 第50條 本團은 必要에 應하여 役員會의 決議를 거쳐 正員 中에서 各地에 地方委員을 둘 수 있음  
地方委員의 任期는 2個年으로 하고 役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음
- 附則  
本團은 西紀 1945年 9月 1日부터 此를 施行함  
第11條는 西紀 1946年 12月 14日 改正하여 同日부터 施行함

※ 朝鮮建築技術團의 團則을 1947年 4月 23日 改正하면서 朝鮮建築技術協會로 改稱

(2) 朝鮮建築技術協會 會則(1947年 4月 23日 改正)

第1章 總則

- 第1條 本會는 朝鮮建築技術協會라 稱함
- 第2條 本會는 建築에 關한 各種의 研究調査連絡及指導를 行하여야 斯界의 發展을 圖謀하고 아울러 建築國策에 協定함을 目的으로 함
- 第3條 本會는 事務所를 서울市內에 此를 置함
- 第4條 本會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음
- 第5條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左의 事業을 行함
  - 1. 建築에 關한 學術手藝의 研究及調査
  - 2. 建築技術者의 登錄 配置及指導
  - 3. 建築教育의 振興及勞動者의 技能向上
  - 4. 建築各部門에 連絡協力及建築과 社會部門과의 連絡協力

- 5. 建築國策에 關한 調査研究及其實施에 協力
- 6. 建築에 關한 社會認識의 啓發과 普及
- 7.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事項

第2章 會員

- 第6條 本會를 組織하는 會員을 左의 2種으로 함
  - 1. 正員 2. 贊助員
 正員은 建築의 技術 또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로서 相當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及 特히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  
 贊助員은 個人又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者  
 第7條 第8條의 會員外에 准員贊成員及 名譽員을 둘 수 있음  
 准員은 建築技術學習中의 者 또는 業務에 從事하되 正員의 資格을 具備하지 못한 者  
 贊成員은 本會의 目的을 贊成하고 事業을 協力하는 者  
 名譽員은 正員으로서 學識名望이 있고 또 本會를 爲하여 功績顯著한 者로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推舉된 者  
 第8條 正員이 되고자하는 者는 正員 2名 以上の 紹介로서 入會志願書를 本會에 提出할 것 그 許否는 理事會此를 決함  
 第9條 贊助員은 正會員 2名 以上の 紹介로서 理事會此를 決함  
 第10條 准員贊成員의 入會手續은 前條의 規定을 準用함  
 第11條 正員은 會費年額金 240圓 准員은 年額金 120圓 贊助員은 年額金 千圓을 各各 納入할 것  
 但 正員准員會費는 年 3回 分納할 수 있음  
 第12條 脫會其他事情에 依하여 會員의 費格을 잃은 者는 既納한 會費는 返還치 아니함  
 第13條 會員으로서 脫會하고자 하는 者는 그 뜻을 本會에 通知할 것  
 第14條 本會員으로서 左에 各項의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이를 除名할 수 있음
  - 1. 本會의 會則에 違反하고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하는 行爲가 있는 者
  - 2. 1個年 以上 會費를 納付치 않는 者
  - 3. 1個年 以上 住所不明한 者

第3章 總會

- 第15條 總會는 通常臨時的 2種으로 하되 理事長此를 召集함 總會에는 正員 以外的 會員을 召集치 아니함
- 第16條 通常總會는 每年 1回此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또는 正員 5分之 1 以上の 請求가 있는 때 此를 召集함
- 第17條 續會에서 決議한 事項은 다음과 같음
  - 1. 役員의 選定及補選에 關한 事項
  - 2. 豫算及 決算에 關한 事項
  - 3. 會則의 變更及 改廢에 關한 事項
  - 4. 會則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 5. 財產의 取得管理及 處分에 關한 事項
  - 6. 其他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 第18條 通常總會는 每年 3月 理事長此를 召集함  
總會의 召集은 적어도 7日 以前에 그 會集의 目的인 事項을 表示하여 郵便電信又는 新聞雜誌로써 此를 通知함
- 第19條 總會의 議事は 出席正員 過半數로써 此를 決하되 可否同數 때는 議長此를 決함  
但 會則의 變更及改廢는 出席正員의 4分之 3 以上の 同意가 있는 境遇에 限함
- 第20條 正員은 自身會場에 出席지 아니하여 會議에 關與하거나 그 票決을 할 수 없음
- 第21條 理事長을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左의 事項通常總會에 提出할 것
  - 1. 前年度收支決算及次年度收支豫算
  - 2. 前年度末에 있어서의 財產目錄
  - 3. 事業의 成績及計劃
  - 4. 協會의 債權及債務
- 第22條 總會에 있어 出席正員 4分之 3 以上の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미리 通知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도 決議할 수 있음

第4章 本會의 役員職員及組織

- 第23條 本會의 左의 役員을 置음
 

理事長	1名
副理事長	2名
理事	12名
評議員	30名 以內

 理事長은 會務를 處理하여 本會를 代表하고 理事會 評議員會의 議長이 됨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事이 事故있을 때는 年長者로 그 職務를 代行함  
 理事는 理事長에 命에 依하여 會務를 分擔處理함  
 評議員은 會務의 重要事項에 關하여 理事長의 諮問에 應함



役員은 演히 名譽職으로 함

- 第24條 役員은 通常總會에서 互選함
- 第25條 役員의 任期滿 1個年으로 함 그러나 再選도 無妨하고 또 滿期後라 할지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그 職務를 續行할 責任이 있음
- 第26條 役員은 理事會의 同意가 없는 限辭任함을 不得함
- 第27條 理事會는 理事長 副理事長 及 理事로서 組織하고 會務全般事項의 執行에 關하여 共同責任을 負함
- 第28條 第18條 所定以外의 事項 及 總會에서 特히 附託한 事項은 總히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此를 處理함
- 第29條 評議員會는 理事會의 諮問에 應하여 重要會務를 審議하고 또 理事長에게 意見을 進達할 수 있음
- 第30條 本會에 顧問若干名을 置함
- 第31條 本會는 左의 職員을 置함

- 1. 幹事 1名
- 2. 書記 囑託 雇員 若干名

職員은 有給으로 하고 理事長此를 任免함

第32條 幹事는 理事長及部長의 指揮를 받고 書記囑託及雇員을 監督하여 一切의 會務에 從事함

書記囑託及雇員은 幹事의 指揮를 받고 事務를 分擔함

第33條 本會에 左의 3部를 두어 事務를 分擔處理함

- 1. 總務部 本會의 一般事務에 關한 事項 會員에 關한 事項 支部의 指揮監督에 關한 事項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는 事項
- 2. 研究部 學術技藝의 研究調査에 關한 事項
- 3. 事業部 連絡 啓發 宣傳 刊行 統計 資料及政策에 關한 事項

第34條 各部에 部長은 理事中에서 互選함

第5章 支部

第35條 支部의 設置는 그 地方會任正員 10名 以上の 發起로써 同地方在 往正員過半數의 贊成에 依하여 支部의 地域及支部規程案을 具備하여 理事長의 承認을 要함

第36條 支部地域內의 在任하는 本會員(准員 贊成員及 名譽員을 包含함)은 該支部에 屬하기로 함

第37條 支部에는 左와 如한 役員을 置함

- 支部長 1名 幹事 若干名

支部長은 支部에 關한 一切에 會務를 處理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음. 幹事는 支部長을 補佐하여 支部 一般事務에 從事함

第38條 支部總會支部役員의 選舉 任期其他에 關하여서는 本會의 規定을 準用함

第39條 支部는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特히 그 地方에 必要한 事業을 할 수 있음

第40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本會에 準함

第41條 支部에 豫算案及決算은 本會理事會의 承認을 經함을 要함 支部는 每年 6月 末까지 前年度의 決算報告書及前年度事業成績報告書를 提出하고 每年 2月 15日까지 次年度의 豫算案을 本會에 提出함

第42條 本會는 支部의 經費로 其支部所屬會員據出會費의 5分之 1 以內의 金額을 交付함 또한 支部에서 行한 臨時事業이 適當하다고 認定될 때는 本會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別로 其經費를 補助할 수 있음

第43條 支部의 經費는 交付金寄附金 其他 收入으로써 此를 支辨함

第44條 支部規定의 變更는 本會理事會의 承認을 要함

第6章 資産及會計

第45條 本會에 基本資産을 置함

- 1. 基本資産은 基本資産으로 指定된 寄附金 及 物件
- 2. 總會에서 基本資産에 編入을 決議한 財産

第46條 本會의 經費는 會費基本財産에서 生하는 收入寄附金 及 其他雜收入으로써 此를 充當함

第47條 本會收入 其他 財産은 利益으로써 此産會員에게 分配할 수 없음

第48條 本會의 財産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 理事長 此를 管理함

第49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에 始作하여 翌年 3月에 終了함

第7章 雜則

第50條 本會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正員中에서 各地에 地方委員을 둘 수 있음

地方委員의 任期는 1個年으로 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見을 陳述할 수 있음

附則

本會則은 西紀 1954年 9月1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第11條는 西紀 1946年 12月 14日 改正하여 同日부터 施行함

第 1, 2, 11, 342條 西紀 1947年 4月 23日부터 施行함 以上

가. 朝鮮建築技術協會 會則 1948年 3月 27日(第4回定期總會) 改訂抄는 다음과 같다.

◎ 改訂要綱

1. 機構改革(在來의 理事會 評議員會를 中央委員會 常任委員會로 改訂함)

2. 會費의 增額 及 會員部의 增設

第1章 總事

第4條 「理事會」를 「中央委員會」로

第2章 會員

第7條 「贊成員」項 削除

第11條 正員은 會費月額圓准員은 月額 50圓 贊成員은 年額 2萬圓을 各 各納入할 것  
第6, 7, 8, 9, 14條 「理事會」를 「中央委員會」로

第3章 機關

第15條 本會에 左의 機關을 置함

- 1. 總會 2. 中央委員會
- 3. 常任委員會 4. 評議員會

第16條 總會는 通常臨時的 2種으로 하고 委員長此를 召集하되 7日 以前에 其會議의 目的이 事項을 提示하여야 此를 通知함

總會에는 正員 以外의 會員을 召集하여야 하며 正員은 自身總會에 出席치 아니하면 會에 關與하거나 그 票決을 할 수 없음

第17條 通常總會는 每年 1回 3月 中에 此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中央委員會의 決議에서 必要하다고 認한 때 또는 會員 5分之 1 以上の 請求가 있을 때 此를 召集함

第18條 總會에서 決議할 事項은 左와 如함

- 1. 中央委員의 選定
- 2. 豫算及決算
- 3. 會則의 變更及改廢
- 4. 財産의 取得管理 及 處分
- 5. 其他 中央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項

第19條 委員長은 中央委員會의 承認을 거쳐 左의 事項을 通常總會에 提出할 것

- 1. 前年度收支決算 及 次年度收支豫算
- 2. 前年度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 3. 事業의 成績 及 計劃
- 4. 協會의 債權 及 債務

第20條 總會의 議事는 出席正員의 過半數로써 此를 決하되 可否同時인 때는 議長此를 決함

第21條 總會에 있어 出席正員過半數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미리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 決算할 수 있음

第22條 中央委員會는 中央委員으로 構成하며 月 1回 以上委員會此를 召集하고 中央委員會總數 3分之 1 以上出席으로써 成立함

第23條 中央委員會의 事業은 左와 如함

- 1. 總會間의 重要事項의 決議
- 2. 委員長副委員長常任委員(上記者는 中央委員中에서) 評議員의 選出 及 中央委員의 補選
- 3. 常任委員會事業의 決定調整 及 審査

第24條 常任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及常任委員으로 構成하며 臨時委員長此를 召集하고 定員半數 以上으로써 成立함

第25條 常任委員會의 事業은 左와 如함

- 1. 總會 及 中央委員會 決議事項의 執行
- 2. 各部事務의 連絡調整

第26條 常任委員會에 左의 部書를 두어 事務를 分擔處理함

- 1. 總務部……本會의 一般事業에 關한 事項 支部監督에 關한 事項 其他 他部에 處하지 않는 事項
- 2. 會員部……會員의 募集 登錄 配賦 連絡 指導 福利及 會費徵收에 關한 事項
- 3. 研究部……學術技藝의 研究調査에 關한 事項
- 4. 事業部……啓發宣傳 刊行 政策에 關한 事項

第27條 評議員會는 評議員으로써 構成하고 常任委員會의 諮問에 應함

第4章 任員及職員

第28條 本會의 左의 任員~ 등

- 委員長 1名
- 副委員長 2名
- 常任委員 若干名
- 中央委員 30名 內外
- 評議員 若干名

委員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會務總理함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有故時는 年長者其 職務를 代行함

常任委員은 委員長 副委員長을 補佐하여 會務를 處理함



中央委員은 中央委員會를 통하여 重要會務의 決議에 參加할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통하여 常任委員會의 諮問에 應할  
任員은 名譽職으로 할  
任員의 任期는 滿 1年으로 하고 中央委員會의 同意가 없는限 辭任할  
을 不得할

第29條 本會에 顧問 若干名을 置할 수 있을  
顧問은 中央委員會에서 此를 推載할

第30條 本會에 有給職員 若干名을 置하되 常任委員會此를 任免할  
職員은 委員長 副委員長 各部長의 指揮下에 事務를 分擔할

第5章 支部

第32條 (舊會則 第35條 中 「理事會」를 「中央委員會」로 改稱한 辨)

第32條 (舊會則 第36條 中 「贊成員」을 「贊助員」으로)

第33條 (舊會則 第37條 中 「役員」을 「任員」으로 「理事會」를 「中央委員  
會」로 「意見을 陳述할 수 있을」을 「會議에 參加할 수 있을」으로)

第34, 35, 36條 (舊會則 第38, 39, 40條)

第37, 38條 40條 (舊會則 第41, 42, 44條 中 「理事會」를 「中央委員會」로)

第39條 (舊會則 第43條 中 「寄附金」을 「補助金」으로)

第6章 資産及會計

第41, 42條 (舊會則 第45, 46條 中 「寄附金」을 「特別贊助金」으로)

第43條 (舊會則 第47條)

第44條 (舊會則 第48條 中 「理事長」을 「委員長」으로)

第45條 (舊會則 第49條)

第7章 雜 則

第46條 (舊會則 第50條 中 「理事會」를 「中央委員會」로 「意見을 陳述할  
수 있을」을 「決議에 參加할 수 있을」으로) (以上)

나. 1949年 3月 26日(第5回 定期總會) 會則을 改正하  
였다. 그 記錄은 朝鮮建築 第3卷 第2輯에 掲載되어  
있다.

(3) 大韓建築學會 會則 (1954年 3月30日 施行)

第1章 總 則

第1條 大韓建築學會(以下本會라 稱함)는 建築에 關한 學問手術을 研究  
鍊磨하며 建築技術者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建築文化發展에 寄與할  
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會는 本部를 首都에 둔다

第3條 本會는 總會의 決議를 行어 必要한 곳에 支部를 設 수 있다

第4條 本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  
한다

1. 建築에 關한 調査 및 研究指導
2. 建築에 關한 圖書 其他 雜誌 印刷物의 刊行
3. 建築에 關한 懇談會 講演會 見宴會 展覽會의 開催
4. 建築에 關한 計劃設計 監督의 委託其他本會에 必要한 目的을 達成  
함에 必要한 事項

第2章 會員 및 會費

第5條 本會會員은 左의 4種으로 한다

1. 正會員
2. 準會員
3. 名譽會員
4. 贊助會員

第6條 各會員의 資格은 左와 如함

1. 正會員 正規의 大學 또는 專門學校에서 建築에 關한 學科를 專攻하  
고 이를 卒業한 者 또는 同等 以上の 資格이 有한 者로써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承認을 받은 者
2. 準會員 建築事業에 關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 或은 建築學을 專  
修하는 者 中 正會員 2名 以上の 推薦이 있는 者로써 理事會의 承認  
을 받은 者
3. 名譽會員 各界의 學識德望이 높은 人士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推  
載한다
4. 贊助會員 建築의 關係를 가진 個人 또는 團體로써 本會의 目的을 贊  
助하는 者로써 理事會의 決議로 加入케 한다

第7條 各會員은 左記該當金額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 |      |   |            |
|------|---|------------|
| 正會員  | 月 | 100圓       |
| 準會員  | 月 | 50圓        |
| 名譽會員 |   | 免除         |
| 贊助會員 |   | 20,000圓 以上 |
- (但 年2回로 分納할 수도 있음)

第8條 會員으로서 左記各項에 該當한 者는 理事會의 決議로써 除名할  
수 있다

1. 本會의 會則을 違反하고 또는 本會의 名譽를 汚損시키는 行爲가 有

는 者

2. 1個年 以上の 會費를 納付치 않는 者  
第9條 脫會코저 하는 者는 會費를 完納한 다음 其趣旨를 本會에 通知  
하여야 한다

第10條 脫會 其他 事由에 依하여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 者는 既納한 會  
費의 返還을 要求치 못한다

第3章 任員 職員 및 部署

第11條 本會에 左의 任員을 둔다

- |     |        |     |               |
|-----|--------|-----|---------------|
| 會長  | 1名     | 副會長 | 2名            |
| 理事  | 30名    |     | (地方理事 10名 以內) |
| 評議員 | 若干名 以內 |     |               |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時에는 副會長中 年齒順으로  
其職務를 代行한다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통하여 理事會의 諮問에 應한다

各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各任員의 任期는 滿 2個年으로 하고 理事會의 同意가 없는 限 辭任할  
수 없으며 再選할 수 있다

第12條 本會에 左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本會의 一般事務에 關한 事實經理에 關한 事項 支部監督에  
關한 事項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은 事項
  2. 研究部 學術手藝의 研究調査에 關한 事項
  3. 事業部 啓蒙 宣傳刊行 政策에 關한 事項
  4. 設計部 設計 計算 및 計劃에 關한 事項
- 各部長은 理事會의 決議로써 此를 選定한다

第13條 本會에 有給職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의 決議로 會長이 此를 命  
한다

職員은 會長副會長 各部長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第4章 會 議

第14條 本會議는 左의 3種으로 한다

1. 總 會
2. 理 事 會
3. 評議員會

第15條 總會는 定期 臨時的 2種으로 하고 會長 此를 召集하되 7日 以前  
에 其會議目的 事項을 提示하여 此를 通知한다

總會에는 正會員 外에 會員을 召集하여야 되며 正會員은 自身 總會에  
出席치 아니하면 會議關與하거나 그 票決을 할 수 없다

第16條 定期總會는 每年 1回次 3月中에 此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  
會의 決議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또는 會員 5分之 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此를 召集한다

第17條 總會에서 決議할 事項은 左와 如하다

1. 會長 副會長 理事 評議員의 選定
2. 事業計劃
3. 豫算及決算
4. 會則의 改廢 및 變更
5. 財産의 取得管理處分
6. 其他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된 事項

第18條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左의 事項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야 한다

1. 前年度 收支決算 及 次年度 收支豫算
2. 前年度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3. 事業의 成績及計劃
4. 本會의 債權及債務

第19條 總會의 決議는 出席正會員의 多數決로써 此를 決하되 可否同數  
일 때는 議長 此를 定한다

第20條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하며 月 1回以上 會長 此를 召集하고 理  
事總會의 3分之 1 以上 出席으로서 成立되고 議決은 多數決로 決하되  
可否同數일 時에는 議長이 此를 決定한다

第21條 評議員會의 業務는 左記와 如하다

1. 本會의 重要事項의 決議
2. 總會의 議決事項의 執行

第5章 資産 및 會計

第22條 本會에 基本資産을 둔다

1. 基本資産은 基本財産으로 指定된 贊助費及物件
2. 總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을 決議한다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會費 及 基本財産에서 生하는 收入贊助會費 及 其  
他雜收入으로서 步를 充當한다

第24條 本會의 財産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 此를 管理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7月에 始作하여 翌年 6月에 終了한다  
但 4287年度는 4月에 始作하여 翌年 6月에 終了한다



第6章 支部

第26條 支部의 設置는 그 地方在任 正會員 10名 以上이 發起로서 同在 任正會員過半數의 贊成에 依하여 支部의 地域及 支部規程案을 具備하여 總會의 決議를 이어야 한다

但 本部所在地에는 支部를 設할 수 없다

第27條 支部地域內에 在任하는 會員(準會員會員 包含)은 支部에 屬하기로 한다

第28條 支部에 左와 如히 役員을 둔다

支部長 1名

幹事 若干名

支部長은 支部에 關한 一切會議를 處理한다

支部長이 本會理事會에 出席時에는 理事의 資格을 所有한다. 幹事는 支部長을 補助하여 支部事務에 從事한다

第29條 支部總會 支部役員에 選舉任期에 對하여서는 本會의 規程을 準用한다

第30條 支部總會時에는 本部에서 理事一人 以上을 派遣하여 參席키로 한다

第31條 支部는 總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特히 其地方에 必要한 事業을 할 수 있다

第32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本會에 準한다

第33條 支部는 每年 6月 末까지 前年度의 決算報告書 及 前年度 事業成績報告書를 提出하고 每年 3月 15日까지 事業計劃書 及 豫算案을 本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4條 支部의 經費는 支部會費 及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써 此에 充當한다

第7章 附則

第35條 本會는 必要에 應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理事中에서 各地에 地方理事를 設할 수 있다 地方理事의 任期는 1年을 滿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本會則에 詳細한 것은 理事會의 決議로 細則을 定한다

本會會則은 西紀 4287年 3月 30日부터 施行한다

가. 1955年 7月 9日 開催된 定期總會에서 會則改正이 있었다.

나. 1962年 2月 10日 開催된 定期總會에서 會則改正이 있었다.

① 會費의 種類 額數 徵收 方法은 理事會 決議에 依함

② 任員에 監事 2人을 두기로 함.

다. 1964年 1月 25日 開催된 定期總會에서 會則改正을 하고 未備點에 對한 改正은 理事會에 一任키로 함.

改正理由

① 社團法人으로 登錄하기 爲함.

② 1963. 4. 23일자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단체관리 에 關한 사무취급에 對하여 시달된 사항을 이행하기 爲함.

③ 參與制度를 新設함.

大韓建築學會 會則

(1964.1.25 改正)

第1條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以下本會라 稱함) 建築에 關한 學問技術을 研究鍊磨하며 建築技術者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建築文化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中區明洞2街5의5에 둔다

第4條 本會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5條 本會會員은 다음과 같은 4種으로 한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6條 各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① 正會員.....現行會則과 같음

② 準會員.....現行會則과 같음

③ 名譽會員 各界의 學識德望이 높은 人士 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서 推戴한 者

④ 贊助會員 建築에 關係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者 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定入한 者

第8條 會員으로서 다음 各 項에 該當한 者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

할 수 있다

第11條 ①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2名

理事 33名 監事 2名

評議員 45名

② 本會는 前任 任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많은 者를 總會決議로서 參與로 推戴할 수 있다

參與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各任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한다

各任員은 理事會의 同意가 없는限 辭任할 수 없으며 再選될 수 있다

第12條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14條 本會會議는 다음과 같은 3種으로 한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15條 總會는 定期 臨時의 2種으로 하고 會長이 此를 召集하되 7日 以前에 其會議目的 事項을 提示하여 此를 通知한다

總會는 正會員으로 成立하며 正會員은 自身總公에 出席치 아니하면 會에 開與하거나 그 票決을 할 수 없다

第17條 總會에서 決議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役員 및 參與의 選定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18條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다음 事項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19條 總會의 議事は 出席正會員의 多數決로써 此를 決定하되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此를 決定한다

第21條 理事會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以下 現行會則과 같음

第28條 支部에 다음과 같은 役員을 둔다

第36條 第17條 1項 및 4項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이어야 한다

第37條 本會가 解散코져 할 때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결처를 받아야 한다

라. 1967年 3月 25日 開催된 定期總會에서 定款 改正이 있었으며, 提案理由 및 改正條項은 다음과 같다.

(1966年度 總會에서 理事會에 委任한 것中 社團法人 許可를 取得하는데 許可官廳(건설부)의 要求로 불가피하게 고쳐져 1967年 3月 11日 許可日자와 同時 定款이 改正됨. 이 改正된 案을 審議通過시켰다. 그리고 改正案에 있어 字句修正이나 本質的인 變更을 招來치 않은 限度內에서의 修正은 理事會에 委任키로 함.

1. 提案理由

學會의 目的達成과 健全한 發展을 圖模하는데 根幹이 될 수 있는 定款을 이룩하자는데 있음

2. 重要 要點

全般的인 條項에 걸쳐 修正을 가하는 同時

가. 正會員의 資格을 높이고 學生會員을 新設함(第7條)

나. 會費納付에 多年間 實績으로 學會發展을 圖模한 會員에 對한 待遇規定新設(第8條)

다. 會費納付에 對한 規定新設(第10條)

라. 參與推戴에 對한 制限(第13條 ③)

마. 事務局에 關한 條項新設(第15條)

바. 總會의 會議成立定數를 定함(第18條)

사. 總會開催月을 1月에서 4月로 고침(第19條)

아. 基本資産을 造成키 爲한 條項新設(第26條 ②)

자. 會計年度를 每年 10月 1日~翌年 3月 31日로 고침(第31條)

차. 現地方理事制를 活用, 支部, 未設置地域의 支部長役割을 할 수 있게 함(第41條)

카. 定款變更과 解散에 對한 章을 新設(二章)



大韓建築學會 定款

(1967.3.25 改正)

第1章 總則

- 第1條(名稱) 本會는 社團法人大韓建築學會라 稱한다
- 第2條(目的) 本會는 建築에 關한 學問技術을 研究 鍊磨하며 建築技術者의 地位向上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建築文化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本部所在地)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4條(支部設置) 本會는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必要한 處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第5條(事業種目)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建築에 關한 調査 및 研究指導
  2. 建築에 關한 圖書 其他 會誌 印刷物의 刊行
  3. 建築에 關한 講習會, 講演會, 懇談會, 展覽會, 見學會 等의 開催
  4. 建築에 關한 計劃 鑑定 監督 및 技術檢討에 對한 國家 公共機關 其他 依賴에 關한 事項
  5. 國內外 關係 諸學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2章 會員 및 會費

- 第6條 本會會員은 다음과 같이 五種으로 한다
  1. 正會員
  2. 準會員
  3. 學生會員
  4. 名譽會員
  5. 贊助會員
- 第7條(會員資格 및 入會) 各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正規大學 또는 舊制專門學校에서 建築에 關한 學科를 專攻하고 이를 卒業한 者로서 實務經驗이 2年 以上인 者 또는 同等 以上의 資格이 有한 者 中 正會員 2名 以上의 推薦이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承認을 받은 者
  2. 準會員 正規大學 또는 舊制專門學校에서 建築에 關한 學科를 專攻하고 이를 卒業한 者 또는 建築事業에 關係를 가지고 相當한 經歷이 있는 者 中 正會員 2名 以上의 推薦이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者
  3. 學生會員 大學 初級大學 專門學校建築工學科 在學生 또는 이에 準하는 者 中 正會員 2名 以上의 推薦이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者
  4. 名譽會員 建築工學 및 이에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望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者로서 理事會의 決議로서 推戴한 者,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特權을 享有하되 入會金 및 年會費를 免除한다
  5. 贊助會員 (중견과 같음)
- 第8條(會費) ①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일단 納付한 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하되 正會員과 準會員의 會費比率는 正會員 2準會員 1로 한다
 

② 本會 創設當時부터 正會員으로서 滿 65歲에 達한 會員 및 35年 以上 會費를 納入한 會員은 以後 會費를 免除한다
- 第9條(除名)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 第10條(資格停止 및 喪失) 本會 會計年度內에 當年度 會費를 完納치 못한 者는 理事會決議로 會員資格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資格停止發效日 以後 滿 2年內에는 未納會費의 納付와 同時에 會員資格이 復歸된다. 但 資格停止發效日 以後 滿 2年이 經過한 者는 理事會決議로 除名할 수 있다
- 第11條(脫會) 本會 會員中 本會를 脫會코저 하는 者는 會員 辭退書를 本會 事務局에 提出함으로써 脫會된다

第3章 任員職員 및 部署

- 第12條(任員의 定員) ①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2名
  3. 理事 33名(會長 副會長은 當然敍理事로 한다)
  4. 監事 2名
  5. 評議員 40名

② (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 (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放時는 副會長 中年齡順에 依하여 其 職務를 代行한다

④ (理事의 職務) 左와 같음

⑤ (監事의 職務) 監事는 會計 事務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⑥ (評議員의 職務) 左와 같음

- ⑦ (任員의 性格) 左와 같음
- ⑧ (任員任期 및 補選) 各任員의 任期는 總會에서 選出된 날로부터 2年으로 한다
 

任員의 缺任時는 理事會에서 選任하고 다음 總會時 追認받으며 任期는 前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⑨ (再選) 各任員은 再選될 수 있으며 그 任期가 滿了된 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 第13條(參與推戴) ① 本會는 前任任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者를 總會決議로서 參與로 推戴할 수 있다
 

② 參與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다만 議決權은 가지지 않는다

③ 1年間의 推戴할 수 있는 參與의 數는 2名을 超過하지 못한다
- 第14條(部署)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本會의 一般事務에 關한 事項(以下 中견과 같음)
  2. 研究部 (중견과 같음)
  3. 事業部 啓蒙 宣傳刊行 目的에 따른 諸事業에 關한 事項
- 第15條(事務局) 本會에 事務局을 두되 事務局內에 有給職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로 會長이 任명한다
 

職員은 會長, 副會長, 各部長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第4章 會議

- 第16條(會의 種類) (以下 中견과 같음)
- 第17條(總會) 總會는 定期臨時의 2種으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되 7日 以前에 그 會議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이를 通知한다
- 第18條(總會의 成立) 總會는 在籍會員 正會員의  $\frac{1}{10}$  以上 出席으로 成立하고 會員은 自身總會에 出席치 아니하면 會에 參與하거나 表決을 할 수 없다
- 第19條(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召集) 定期總會는 每年 1회씩 4月中에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다음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1. 理事會 決議로서 要求할 때
  2. 會長이  $\frac{1}{20}$  以上의 連署로서 要求할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 臨時總會를 要求할 때는 理由를 書面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但 臨時總會 召集要求를 接受하였을 때는 그 接受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 第20條(總會의 役割) 總會의 議決을 얻을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左와 같음
  2. 左와 같음
  3. 歲入歲出豫策의 決定 및 決策의 承認
  4. (以下 中견과 같음)
- 第21條(總會의 議題) (중견과 같음)
  1. 前年度 歲入歲出決策 및 次年度 豫策
  2. (以下 中견과 같음)
- 第22條(總會議事) 總會의 議事は 出席正會員의 多數決로써 이를 決定하되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 第23條(理事會成立과 議決) 理事會는 理事로서 構成하며 月 1회 以上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理事 總數의 3分之 1 以上 出席으로서 成立되고 議決은 多數決로 決定하되 贊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 第24條(理事會의 役割) 理事會의 議決을 얻을 事項은 다음과 같다
  4.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諸委員會의 設置에 關한 事項
  5. (以下 中견과 같음)

第5章 資產 및 會計

- 第25條(資產의 構成) 本會의 資產은 다음 項目으로써 構成된다
  1.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2. 贊助金과 贊助한 物件
  3. 資產에서 生진 수익
  4. 其他의 收入
- 第26條(基本資產) 本會에 基本資產을 둔다
  1. 基本資產으로 指定寄附된 贊助金 및 物件
  2. 總會에서 基本資產으로 編入을 決議한 財産

② (基本資產의 造成) 基本資產을 造成하기 爲하여 每年度 決算移越金의 一割 以上을 積立할 수 있다
- 第27條(通常資產) 基本資產 以外의 資產은 通常資產으로 한다
- 第28條(經費) 本會의 經費는 通常資產으로서 充當한다
- 第29條(資產의 管理) 基本資產의 管理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하고 本會의 모든 資產은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 第30條(特別會計) 必要한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
- 第31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6章 支部 및 地方理事

- 第32條(支部의 所在地) 本會는 直轄市 各道 및 必要한 處에 支部를 둘 수 있다. 但 本部 所在地에는 支部를 둘 수 없다



- 第33條(支部의 構成) 支部는 該當 道, 市에 거주하는 正會員 10名 以上 으로서 構成한다
- 第34條(支部任員) 支部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支部長 1名 2. 支部評議員 若干名  
 3. 支部 幹事 1名 4. 支部 監事 1名
- 第35條(支部任員의 選出) 支部의 任員은 支部規約에 따라 選出하고 支部長 및 支部幹事는 支部의 推薦을 거쳐 會長이 이를 認准한다
- 第36條①(支部長의 義務) 支部長은 每年 3月에 任員名單 前年度의 會務 報告書와 監查報告書를 本會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支部의 義務)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本會 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37條(支部의 義務) 支部는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을 이행한 의 무를 갖는다
- 第38條(支部規約) 支部規約은 支部가 作成하되 本會 理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39條(支部運營) 支部에 所屬하는 通常資產의 4分之 3은 支部運營에 充當한다
- 第40條(支部總會의 參席) 支部總會時에는 本部에서 理事 1人 以上을 派遣하여 參席키로 한다
- 第41條①(地方理事) 支部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의 會員을 爲하여 그 地域에 地方理事를 둘 수 있다  
 ② 地方理事는 그 地域在住 正會員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會長이 임명한다  
 地方理事의 任期는 本會任員과 같다  
 ③ 地方理事는 每年 3月에 所屬會員 名單을 本會 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하고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第42條(支部長 地方理事의 權利) 支部長 및 地方理事는 本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 第7章 定款變更과 解散
- 第43條(定款變更) 本會 定款中 第20條 4號는 總會에서 出席正會員의 2/3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44條(解散) 本會가 解散코져 할 때는 總會에서 出席正會員의 3/4 以上の 同意를 얻어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 第45條(資產의 處理) 本會가 解散한 때의 殘餘資產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處理한다

附 則

1. 本會 定款에 未詳한 點은 理事會의 議決로 規程을 定한다
2. 第20條의 4.5號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3. 舊定款下의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은 本定款이 發效되는 날 本定款下에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4. 本定款은 1967年 7月 1日부디 發效한다

마. 1968年 5月 4日 定期總會에서 總會議에서의 發議로 定款一部改正이 決議됨.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는 條項을 新設  
 (1968年 5月 29日 會長團會議에서 定款 第13條 第10項에 名譽會長 推戴란을 新設함).

바. 1970年 5月 9日 定期總會에서 定款改正要旨가 審議決議되고 條文作成은 理事會委任에 따라 1970年 10月 5日 理事會에서 審議決定하고 1971年 4月 17日 定期總會에 報告함. 定款改正要旨 및 改正條項은 다음과 같다.

1. 改定提案의 目的

學會任員機構와 그 選任節次 등을 改善하여 革新하고 效率적인 運營을 圖謀함으로써 本會의 基本目的인 建築學術文化向上에 置重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改定提案의 主要 骨子와 그 理由

1. 任員의 選任은 直選制度에서 間選制度로 바꾸고 總會의 認准을 받게 한다(理事는 例外).  
 (理由) ① 總會에서 任員直選節次를 省略하여 總會는 主로 學術發表交流에 置重케 할 수 있다  
 ② 會員數가 多數인데 總會에서의 直接選舉는 事實상 不可能하며 이와 같은 理由로 國內外學會의 大部分이 間選에 의하고 있다

- (例 美國 A.I.A 大韓土木學會 日本建築學會)
2. 會長은 重任하지 않는다  
 (理由) 重任을 피함으로써 意慾적이고 斬新한 氣風을 導入코져 한다
  3. 理事는 새로 選任된 會長이 委囑하고 定員數를 減縮하고 每年 半數씩 交代시킨다  
 (理由) ① 지금까지 總會서 直選하게 되었으나 運營상 會長團에 一任하는 것이 例外 없는 慣例로 되어 있다  
 ② 理事會 運營상 理事定員은 過多할 必要 없고 減縮함으로써 理事의 責任意識을 強調한다  
 ③ 每年 半數씩 交代로 理事를 委囑함으로써 可能한 限 有能한 會員이 年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助成한다. 또 在來와 같이 모든 任員이 同時에 任期滿了 退任할 때는 空白期間이 생기고 繼續性 있는 事業을 推進하기 곤란하다
  4. 評議員會 制度를 廢止한다  
 (理由) ① 在來의 評議員은 消極적인 諮問機關이었으며 또 한 地域會員의 代表로서의 意義가 없었다  
 ② 評議員機構는 지금까지 活用되지 못하였다
  5. 「參與」를「參與理事」로改編하고 機能을補強하고 擴張한다  
 (理由) ① 「參與」의 消極적인 참여활동의 一般的 傾向을止揚코져 한다  
 ② 評議員制度를 廢止하는 대신에 參與理事制度를 두고 議決參加權을 부여, 機能을 補強하고자 함  
 ③ 參與理事의 定員을 在來의 「參與」數 보다 擴張하여 建築界元老人士와의 紐帶를 強化코져 함

3. 改定(要旨)案의 內容

1. 任員의 種類·定員·任期·選任方法·其他

種 類	定員	任期	選 任 方 法	其 他
會 長	1 人	2年	別途構成하는 指名委 員團에서 總會開催一 月前에  추천하여 總會 에서 確定한다	重任을 禁한다
副 會 長	2 人	2年	會長의 選任方法과 같 다	
參與理事	其他欄參 照	終身	會長의 選任方法과 같 다	參與理事의 定員資 格基準은 別途정하 는 規則에 의한다
理 事	23人	2年	會長團의 選出하여 會 長이 委囑한다	①定員 23人 中에는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포함 ②每年 半數씩 交替 함
監 事	2 人	2年	會長의 選任方法과 같 다	

※ 名譽會長은 從前의 定款과 같다.

2. 指名委員團의 構成

指名委員團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① 名譽會長
- ② 歷代會長團 全員
- ③ 參與理事 全員
- ④ 半數交替規定으로 인하여 會長團과 同時에 任期滿了되어 退任하는 理事全員



3. 理事會成立과 議決

理事會는 理事過半數 이상의 參席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參席한 理事의 過半數로 決定한다. 參與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갖는다.

4. 選任規則의 制定

모든 任員의 資格基準 및 選任節次에 대하여는 理事會에서 定하는 別途規則에 의한다.

5. 經過措置

(1) 이 改定(要旨)案이 통과된 후 最初의 任員選任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會長, 副會長 및 監事는 從前의 選任方法에 의하여 選任한다.
- ② 理事는 이 改定案에 의하여 1年 任期理事 2年, 任期理事로 구분하여 委囑한다.
- ③ 이 定款 改定時의 名譽會長은 改定된 定款에 의하여 推戴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定款 改定時의 參與는 改定된 定款에 의하여 參與理事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 ⑤ 이 改定案에 의한 最初의 參與理事는 다음으로 構成되는 委員會에서 選任하고 次期總會에서 追認을 받는다.

- 가. 名譽會長
- 나. 歷代會長團 全員
- 다. 從前의 參與 全員
- 라. 새로 選任된 理事 全員

6. 改定(要旨)案의 處理

이 總會에서 選任되는 會長 및 關係任員은 이 定款改定(要旨)案을 反映한 改定案을 成文化하여 早速한 時日 안에 法律上의 諸節次를 履行하여 1971年 定期總會에 報告, 確認을 받아야 한다.

大韓建築學會 改正定款 (1970. 5. 9 改正)

제 4 조(지부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본부 소재지 이외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정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 사 23명  
(회장 부회장 포함)
- 4. 참여이사 약간명
- 5. 감 사 2명

- ②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적으로 한다
- ③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 및 참여이사의 직무) 이사 및 참여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회무의 의결에 참가한다
- ⑥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⑦ (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참여이사 감사는 총회 개회 1월전 별도의 선출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 인준으로 추대한다
  - 2. 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이사의 반수(10명)씩은 격년으로 선출한다
- ⑧ (재선) 임원(참여이사 제외)은 재선될 수 있으나 회장은 중임하지 않는다

- ⑨ (임원의 임기) 참여이사는 종신 기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먼저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⑩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명예회장 추대) 전 회장 중에서 공적이 현저한 분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라 ②항 삭제
- ③ 명예회장은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④항 삭제

제 16 조(회의 종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 1. 총 회
- 2. 이사회

제 20 조(총회의 역할) 총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인준
- 제 23 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이사 참여이사로서 구성하며 원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의결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참여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 32 조 삭제

부 칙

4. 본 정관은 1971년 4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사. 1974年 4月 27日 定期總會에서 定款一部가 改正되었으며 改正目的 主要內容 改正條項은 다음과 같다.

- ① 改正目的 會員이 증원됨에 따라 現理事의 수를 늘려 참여도를 높이고 外國에 支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國際交流와 會勢를 확장코저 하는데 있음.
- ② 主要內容 理事수를 23名에서 33名으로 확장 外國에 支部를 設置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 ③ 改正條項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중 “이사 23명”을 “이사 33명”으로 한다 제 12 조 제 7 항 제 2 호 단서중 “이사의 반수(10명)”를 “이사의 반수(15명)”로 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32 조(지부의 구성) (1) 지부는 해당 시도 및 외국에 설치할 수 있다
- (2) 지부 구성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한다

(4)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定款

(1974年 6月 11日 施行 現行定款)

부록 參照